

주요국의 경쟁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Exxon사와 Royal Dutch Shell사, FTC 제소에 대해 화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Royal Dutch Shell사(이하 "Shell사"라 함)와 Exxon사가 점도지수 향상제 - 필수적인 휘발유 첨가제 - 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경쟁을 제한하고 연방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FTC의 제소내용과 관련하여 이들 기업과 화해에 도달하였다. FTC의 제소를 해결하기 위해 Exxon사는 점도지수 향상제 사업부문을 당해 합작투자사업 설립 완성 이전에,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가 승인하는 업체에 매각할 것이다.

1996년 7월 10일 Exxon사와 Shell사는 점도지수 향상제를 포함한 연료 및 윤활유용 첨가제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점도지수 향상제는 점도조정제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휘발유가 높은 온도에서 자동

차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점도 및 엔진이 식어 있을 때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낮은 점도 모두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휘발유에 첨가된다. Exxon사와 Shell사는 모두 합쳐 북미 지역에서의 점도지수 향상제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FTC에 따르면 당해 합작투자기업 설립 제안은 Exxon/Shell사의 합작투자기업과 당해 시장의 잔존기업들이 점도지수 향상제의 제조 및 마케팅에서 경쟁하기보다는 담합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또한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이 당해 합작투자기업으로 인해 상실되는 경쟁을 회복할 만큼 "시의적절하거나, 가능성이 높거나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FTC의 제소를 해결하기 위해, Exxon사는 점도지수 향상제 사업부문을 Chevron Chemical Company, LLC(이하 "Chevron사"라 함) 또는 동 위원회가 승인하는 업체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Chevron사의 Oronite 사업부는 현재 윤활유 첨가제 사업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Exxon사와 Chevron사는 Exxon사의 점도지수 향상제 관련자산과 점도지수 향상제 생

산에 필요한 일정 합성고무 관련자산 매각 협상을 벌였다. 만일 Chevron사에 대한 자산매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Exxon사는 Chevron사에 매각하기로 계획하였던 자산들뿐만 아니라 점도지수 향상제를 생산하지 않는 업체가 Exxon사의 자산을 매입하여 점도지수 향상제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도 추가로 매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된 화해안의 승인 여부에 대한 동 위원회의 투표결과는 4-0이었다.

■ '98. 8. 20, 미 FTC 보도

뉴욕 주의 인쇄업체, 디스플레이 물품 계약 입찰 조작으로 기소돼

뉴욕 주 롱아일랜드에 소재한 한 인쇄업체가 8월 20일 Lorillard Tobacco Co.에 대한 디스플레이 물품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조작 및 계약 할당 공모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가 진행중인 광고 및 디스플레이 물품 산업에서의 입찰 조작, 상거래상의 뇌물 및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의 결과 현재까지 17명의 개인과 8개의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Target Graphics Inc.가 적어도 1992년 2월부터 1994년 2월까지 다른 인쇄업체와 공모하여 Lorillard사의 다수의 인쇄물 제작사업과 관련하여 동 업체가 최저 입찰자가 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해 공모의 결과 Target Graphics 사는 Lorillard사로부터 약 400,000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하였다. 이 형사 기소는 맨해튼 소재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Lorillard사는 여러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데, 이에는 Kent, Newport, True 및 Old Gold, 그리고 기타 담배 제품이 포함된다. 공모가 진행되던 당시 Lorillard사의 본사는 맨해튼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Greensboro로 옮겨졌다.

"반트러스트국은 어느 시장에서든 자유롭고 개방된 경쟁을 방해하는 행동은 기소할 것이다. 정직한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밝혔다.

Klein 국장은 당해 기소는 판매 현장에서 광고, 그리고 주로 소매점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재를 광고 및 판촉하기 위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물품의 공급업체들에 의한 담합적 행동에 대한 뉴욕 주 검찰 남부지청의 조사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당해 조사는 현재 반트러스트국의 뉴욕사무소가 FBI와 국제청의 조

력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Klein 국장은 밝혔다.

초기의 조사에서는 뉴욕 시의 필립 모리스사, 커넥티컷주 Farmington에 소재한 Heublein, Inc., 미시간주 Southfield에 소재한 Hiram Walker & Sons Inc., 그리고 뉴저지 주의 Morris Plains에 소재한 Warner-Lambert의 직원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 법 위반인 입찰 조작 담합에 참여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법인에 대한 최고 형벌은 1,000만 달러의 벌금이다. 이 금액은 범죄행위에 참가한 자가 얻은 이득의 2배액,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액 중 어느 하나가 1,000만 달러의 법정 벌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으로 증액될 수 있다.

■ '98. 8. 20, 미 법무부 보도

미 FTC, Merck사와 반트러스트 위반 방지 조치에 합의

Merck사는 8월 26일 동 회사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요청한 반트러스트 위반 방지조치에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Merck & Co.가 1993년 의료보험 적용약품 판매회사인 Medco Containment Services(이하 "Medco사"라 함)를 취득한 이후 한동안 제약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시켰다고 한 바 있다.

FTC는 이번 새로운 합의는 Merck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되었던 민사소송의 화해를 위해 3년 전에 합의하였던 내용을 대치하는 것으로서 Merck사와 Medco사가 이전의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규제당국은 과거 그러한 행위들이 경쟁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고 하였다. 이전의 화해는 올해 초에 기간이 만료되었다.

새로운 합의에 따르면 Medco사는 의사 및 약제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약품 목록에 들어 있는, 제약업체들이 제조하는 광범한 의약품들을 차별 없이 판매하여야 한다. 그리고 Merck사는 Medco사가 경쟁제품에 관하여 수집한 마케팅 정보에 대하여 스스로가 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한 방지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Medco사와 같은 의료보험 적용약품 판매회사 및 이와 유사한 Eli Lilly 사 및 SmithKline Beecham사 등의 사업부문에서는 의약품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한 후 의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다.

Merck사는 이번 새로운 합의는 Medco사 인수 후 따랐던 정책을 공식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Merck사의 대변인은 1995년 합의 내용과 달라진 것은 의약품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는 "Merck사의 제품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문이 추가되었다는 사실

뿐이라고 하였다.

FTC 경쟁국장인 William Baer는 이번 새로운 합의로 Merck사와 Medco사가 반트러스트 위반 방지조치를 유지하도록 되었으며 동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Medco사가 처방집이라 불리는 선호의약품 목록에서 Merck사의 의약품을 우대하였던 관행으로의 회귀도 방지되었다고 하였다.

Baer 국장은 Merck사가 Merck-Medco 기업결합에 반대하는 약국들을 대리하여 Bacon-Normandi Corp.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1995년 2월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반트러스트 위반 방지조치들을 채택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3년 기한의 당해 합의는 "다소 허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Medco사의 대변인인 Kevin Colgan은 선호의약품 목록에 들어 있는 533개의 유명약품 중 단지 38개만이 Merck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중 40개 제품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동등하게 또는 그보다 더욱 저렴하던가 효과가 있다고 하여 대체 처방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그는 권장제품 중 단지 4개만이 Merck사의 제품이라고 밝혔는데, 이들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제인 Zocor, 심장혈관 질환 치료제인 Prinivil 및 Prinzide, 그리고 녹내장 치료제인 Timoptic XE이다.

FTC와의 합의내용은 Eli Lilly사가 McKesson Corp.로부터 PCS Health Systems를 매수할 때 받아들였던 내용과 유사하다. 이번 Merck사와 FTC 간의 합의는 FTC의 정식 인가가 있는 후 7년간 유효하다. SmithKline Beecham사는 시장점유율이 낮으므로

경쟁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트러스트 전문가들은 말하였다.

■ '98. 8. 28, The New York Times

유 럽

독일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법(안), 연방참의원에서 가결

지난 1998년 5월 29일자 독일 연방경제성 보도에 의하면 연방참의원에서 가결에 의하여 경쟁제한금지법 제6차 개정작업이 종료되고 동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5월 29일 연방참의원은 제6차 경쟁제한금지법 개정(안)에 동의함으로써 전면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시장경제의 기본법」을 가결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동 경쟁법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 앞으로 카르텔의 체결은 금지된다.
- (2) 카르텔 금지의 예외규정은 축소된다. 앞으로 수출입카르텔은 인정하지 않게 된다.
- (3) 어떤 사업자가 시장력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perse) 금지된다. 이미 EU 경쟁법에서와 같이 경쟁당국의 관여가

없어도, 예를 들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독점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4) 합병규제는 EU법과 동일한 사전규제로 되며, 따라서 합병은 인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2. 중소기업의 사업자는 개방시장만 의지할 뿐이므로 개정법은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 시장지배력 있는 사업자가 소규모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원가할인판매는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2) 개정법에는 시장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하여 입을 봉하게 하는 행위(口封行為, Knebelungspraktiken)에 대한 공격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까지 납품업자는 납품선으로부터의 거래정지를 두려워하여 경쟁당국에 대하여 침묵하는 일이 많았지만 개정법에서는 절차상 관계사업자의 익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렉스룻트 경제장관의 담화내용
「이번의 법개정은 경쟁을 일층 촉진시키는 우리의 정책성과를 대표하고, 경쟁은 우리 경제정책의 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며, 이후에도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 이에 따라서 풍부하고 믿음만한 직장의 실현이 가능하다. 새로운 경쟁법은 일층 유럽적인 투명성이 높아지며, 중소기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 원가할인판매에 관한 규정은 국

가에 의하여 가격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자는 자기의 가격을 전혀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 '98. 5. 29, 연방경제성 발표문

유럽위원회, 무선정보기기 운영체제 개발을 위한 합작투자사업 설립 인가

유럽위원회는 무선전화기 제조업체인 에릭슨사 및 노키아사, 그리고 휴대용 컴퓨터 운영체제 제작업체인 Psion사간의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Symbian사로 호칭될 당해 합작투자사업은 무선정보기기에 사용될 EPOC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체제는 휴대용 컴퓨터의 특성과 무선전화의 통신기능을 결합하게 될 것이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설립은 에릭슨사와 노키아사가 Psion Software사의 지분 30%씩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Psion사는 Symbian사로 개명하게 된다. 이후에 새로운 주주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데, 동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새로이 참여하는 주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개발하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Windows CE), GeoWorks(GeoOS), 3Com(PalmOS),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JavaOS), 샤프사(Synergy 운영체제) 및 모토롤라사(LexOS)의 제품들을 비롯하여 무선정

보기기 및 휴대용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동 위원회는 기업결합 규제규칙에 따라 당해 합작투자사업이 무선정보기기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 내지 강화하게 될 것인가를 검토하였다. 현재 시장에서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모기업들이 새로이 개발되는 운영체제를 자신들의 무선정보기기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할지라도 당해 시장 및 이동전화기 시장에서의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자동적으로 운영체제 시장에 옮겨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내지 강화는 없을 것이다.

기업결합 규제규칙 제2조(4)에 따르면 어떠한 합작투자사업이 모기업들의 경쟁적 활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가질 경우 이는 EC조약 85조(1) 및 85조(3)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Symbian사의 형성은 당해 합작투자사업의 활동영역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무선정보기기 시장 또는 이동전화기 시장에서 에릭슨사와 노키아사의 경쟁적 활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98. 8. 13, 유럽위원회 보도

유럽위원회, Telia사와 Sonera사의 UAB Omnitel에 대한 공동지배권 취득 인가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 규제규칙에 따라 Telia AB와 Sonera Cy가 자신들의 합작투자기업인 Amber Mobile Teleholding AB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이동전화사업자인 UAB Omnitel사에 대한 공동지배권을 취득하여 동 회사를 Motorola Lithuania Telecom Inc.(이하 'MLT사'라 함)와 공동으로 지배하려는 계획을 인가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해 사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 내지 강화하지도, 모기업들간의 반경쟁적인 협력을 야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Telia사와 Sonera사는 자신들의 합작투자기업인 Amber Mobile사를 통해 UAB Omnitel사의 주식 55%를 취득하였다. MLT사는 UAB Omnitel사의 주식 35%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Telia사와 Sonera사는 자신들의 합작투자기업인 Amber Mobile사를 통해 MLT사와 공동으로 Omnitel사에 대한 공동지배권을 갖게 된다. 나머지 10%의 지분은 리투아니아의 개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Telia사는 스웨덴의 국영 공공통신사업자이며 Telia Group의 모기업으로서 스웨덴과 외국에 광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onera사(이전에는 Telecom Finland Ltd였음)는 Sonera 그룹의 모기업인 Sonera-Yhtymä Oyj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다. Sonera사는 핀란드의 국영 공공통신사업자이며

핀란드와 외국에 광범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L사는 리투아니아의 Omnitel사의 지주회사이며 전세계적인 통신기기 공급업체인 Motorola Inc.의 자회사이다.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집중은 관련 제품시장 및 지역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 내지 강화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UAB Omnitel사는 리투아니아 이동전화시장에서 활동할 것이다. 이 시장은 EU 외에 있으므로 동 위원회는 EU 경쟁규칙에 따라 이를 평가할 적격이 없다. 그러나 비록 유럽 전역을 기반으로 하여 이동전화 서비스의 공급을 평가하더라도,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의 결과로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새로운 기업결합 규제규칙 제2조(4)에 따르면 어떠한 합작투자기업이 모기업들의 경쟁적 활동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기질 경우 이는 EC조약 85조(1) 및 85조(3)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당해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장에서의 모기업들의 경쟁적 활동의 조정은 있을 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이 경쟁의 제한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98. 8. 20, 유럽위원회 보도

유럽위원회, KKR Associates사의 Willis Corroon Group 인수 인가

유럽위원회는 KKR Group의 회원사인 미국투자회사 KKR Associates사(이하 "KKR사"라 함)가 영국에 소재한 보험 및 재보험 중개업체인 Willis Corroon사를 인수하는 계획을 인가하였다. KKR사는 보험중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의 활동은 중첩되지 않는다. KKR사는 다수의 다각화된 회사들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들 회사는 Willis Corroon사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아니다. KKR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들 중에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Willis Corroon사의 활동영역과 인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는 단 하나 뿐으로서, 독일 회사인 Rhine Re사이다. Rhine Re사는 재보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66위의 재보험업체이다. Willis Corroon사와의 거래액은 Rhine Re사의 중개영업 중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함을 고려할 때 유효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의 형성 내지 강화의 위험은 배제될 수 있다.

KKR Group은 미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투자회사로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경영권 매수를 위한 주식 투자를 한다. Willis Corroon Group은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 재보험 중개업체이자 위험관리 컨설팅 회사로서 주요 활동내역은 주로 영국 및 미국에서의 보험 및 재보험 중개이다.

KKR사는 2개 보험회사, 즉 Bristol West Insurance Group(이하 "Bristol사"라 함)과 Rhine Re사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들은 Willis Corroon사의 활동영역과 인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Bristol사는 EEA 내에서는 영업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으며, Rhine Re사는 모든 종류의 생명 및 비생명 재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Willis Corroon사와의 거래액은 Rhine Re사의 중개영업 중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KKR사의 회사 중 하나가 인수대상 회사의 활동영역과 인접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보험 시장에서의 유효 경쟁에 관하여 인지가할 정도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집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이 결합이 공동시장과 양립가능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 '98. 8. 25, 유럽위원회 보도

일본

공취위, (주)나이키 재팬사에 대한 권고

(주)나이키 재팬사는 나이키 브랜드의 스포츠 신발 소매가격의 수준을 유지할 의도를 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희망소매가격으로 판매할 것과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나이키 신발의 고유기능 중 톱 모델 제품을 중심으로 1995년

중반부터 인기가 상승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자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소매업자에게 희망소매가격으로 판매하고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말 것, 그리고 희망소매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표시한 신문삽입광고 등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1)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를 점포별로 등록시켰고 등록된 점포를 키·어카운트(Key account)와 일반점으로 분류하고 소매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키·어카운트 선정기준에 희망소매가격으로만 판매하고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설정하여 1996년 1월경에 개최한 전시수주회에서 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키·어카운트에만 톱 모델의 제품주문을 받아들였다.

(2) 일반점 가운데 나이키 재팬의 요청을 거절한 점포가 있었기 때문에 1996년 5월경 소매가격의 수준을 유지하는 방침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점포에 관해서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후 동사는 스스로 할인점과의 거래를 중지함과 동시에 1996년 11월경 도매업자에게 그 거래선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할인점에 대하여서는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 소매업자의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1997년 4월경 나이키 신발의

판매에 관하여 성수기 중이거나 성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희망소매가격으로 판매하되 성수기 종료 1개월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희망소매가격에서 30% 할인하며, 성수기 종료 2개월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희망소매가격에서 50%까지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을 인정하고, 희망소매가격을 밀도는 가격을 표시한 신문삽입광고 등은 하지 않도록 소매업자에게 지시하고, 동년 7월경 동사가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지시한 바 있다.

나이키 재팬은 상기 조치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매업자의 점포에 대한 동사 영업부 직원의 순회활동에 의한 타소매업자 고충 청취 결과에 기초하여 상기의 요청을 준수케하고 희망소매가격 또는 성수기 종료후의 할인한도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병행수입품의 취급 또는 희망소매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을 표시한 신문삽입광고 등을 하고 있는 소매업자에게 당해행위의 중지를 지시하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키·어카운트의 등록을 말소하고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나이키 재팬의 상기한 행위에 의하여 소매업자는 대체로 희망소매가격으로 또한 성수기 종료 후 1개월을 경과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수기 종료 후의 할인한도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나이키신발은 판매하고 있다.

1997년 11월 26일 본건에 관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심사를 개시함에 따라 나이키 재팬은 상기한 소매업자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였으며, 공정취인위원회는 독점금지법 제19조(일반징정 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다 하여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였다.

■ '98. 6. 29,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일본햄 현장조사- 소매점 가격구속 혐의로

소매점에서의 햄·소시지상품의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있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는 8월 7일까지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방법)의 혐의로 일본햄의 본사 및 영업소, 판매회사 등 전국 50여개소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한다는 목적에서, 인기상품인 「샤우엡센」등 포장된 햄·소시지상품이 슈퍼마켓 등에서 가격이 인하되어 판매되는 것을 꺼려, 희망소매가격보다 크게 싸지는 일이 없도록 소매점에 지시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 회사의 제품을 판매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소매점들은 요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동 회사는 햄·소시지상품에서 약 21%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기업이다. 동 상품의 1998년 3월까지의 연간매출액은 약 1,260억엔이며, 전국 약 500개 지역에 영업소가 있다.

■ '98. 8. 8, 일본경제신문

기 타

영국 공정거래청, 차량 검사 관련 가격 카르텔 적발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영업하는 최소한 69개소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관련된 차량 검사 카르텔이 영국 공정거래청(OFT)의 카르텔 전담반에 의해 종료되었다. 이들 정비업체들은 대다수의 차종에 적용되는 4급 차량 검사의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하였었다.

당해 조사는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법정 최고한도 수수료인 29.42파운드 이하의 비용으로 4급 차량검사를 받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제보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청장인 John Bridgeman은 성명에서 "다행히도 당해 합의는 시행 직후 공정거래청의 주의를 끌었으며 공모자들과 접촉한 이후 당해 합의는 종료되었다. 그러나 법규상 차량 검사 기관들은 법정 최고한도까지는 자유로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짧은 기간 동안 당해 합의로 인해 일부 고객은 진정으로 경쟁적인

상황이 존재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둘러보기를 권한다. 정비업체들은 법정 최고한도 이하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당수 업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정거래청이 접하는 대부분의 카르텔은 은밀하며 범망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거의 변함없이 제한적 관행법원에 제소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당해 합의는 의도적인 법률 위반보다는 법규의 무지의 결과로 시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또한 당해 합의는 그 당사자들에게 그 합의의 위법성이 명백해진 직후 종료되었다. 따라서 나는 당해 문제를 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카르텔 활동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 검사업체들은 이러한 경고를 새겨들기를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계약서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당해 합의의 당사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모든 업체에 대해 그들의 장래 행동에 관하여 경고 서한을 발송하였다. 현재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쟁법에 따르면 반경쟁적 합의는 금지되며 당사자들은 최고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더욱이 위법한 합의의 영향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8. 8. 12, 영국 공정거래청 보도